

답변서

24

사 건 2016다41272 기타(금전)

원 고 임그루

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

10월 28일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상고 취지에 대한 답변

1.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
 2.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상고이유에 대한 답변

1. 원고가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 사실은 모두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4769

2016. 10. 28

피고 케이티 노동조합

대표자 위원장 정운모



대법원 민사2부 귀중